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37 발의연월일 : 2024. 9. 2.

발 의 자: 장동혁·성일종·이헌승

서범수 · 김예지 · 추경호

김소희 • 박정하 • 조배숙

김상훈 · 강선영 · 백종헌

이인선 • 한지아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그리고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정세 속에서 '적국'이나 '간첩'과 같은 개념이 변화되고 있어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군사 상의 기밀을 탐지·수집·보관·누설 또는 중계하는 행위도 간첩으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 98조).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敵國을 爲하여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助한 者는 死刑"을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 보관· 전달 또는 중계(이하 "간첩 행위"라 한다)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으로, "無期"를 "무기"로, "7年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를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를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군사상의 기밀에 대한 간첩 행위를 한 자도 제1항의형과"로 한다.

제98조(간첩)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98條(間諜) ① 敵國을 爲하여	제98조(간첩) ① 외국, 외국인단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	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助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누설·전달 또는 중계(이하
	"간첩 행위"라 한다)하거나 이
	<u>를 방조한 자는 사형무기</u>
	<u>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u>
	<u>다</u> .
② 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	②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
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u>가단체를 위하여 군사상의 기</u>
	밀에 대한 간첩 행위를 한 자
	<u>도 제1항의 형과</u>